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3

발의연월일 : 2020. 6. 23

발 의 자:김승남・이상헌・조오섭

정청래 • 윤재갑 • 신정훈

김경만 · 김종민 · 진선미

위성곤 나인순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 순위는 김, 미역, 다시마 순서로 우리나라의 김산업은 세계 마른 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에 달함.

특히 바다에서 자라는 홍조류의 일종인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공익적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김산업의 이러한 경제적·공익적 가치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체계적 지원·육성의 노력은 미흡했음.

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산식품이므로 다른 수산식품이나 해조류와 구분하여 별도의 육성·지원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김 및 김 가공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김 및

관련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8조).
-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김 및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김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

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부가가 치를 높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 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과 김파래과 김속 및 돌김속에 속하는 해조를 총칭하는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
- 2. "김산업"이란 김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유통·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김산업 종사자"란 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4. "김산업특구"란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 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3. 김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4. 김양식·생산성 향상 및 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 5. 김 및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개척과 홍보에 관한 사항
- 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 7.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김의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 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 및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김산업 연구소) ① 김 및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김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산업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연구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연구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김의 양식·생산·가공기술 연구·개발사업

- 2. 김용 약제개발 및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개발사업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연구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⑦ 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경영안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김의 생산기반 및 재해예방 시설 설치 등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세계화 촉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김 및 김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김산업특구의 지정) ① 김산업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 1.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 ② 김산업특구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하거나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할수 있다.
- ③ 김산업특구의 신청·지정과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김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김산업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김산업특구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김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김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제13조에 따른 김산업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김산업특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김산업특구의 지정취소·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자료제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